

대학도서관을 위한 정보 공정사용 지침 구성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Fair Use Guidelines for Academic Libraries

최상희(Choi, Sanghee)*

초 록

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윤리적, 합법적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지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 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한 후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 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dical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educators and students of university to learn how to use copyrighted works ethically and legally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academic librar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ies to inform them fair use criteria and to provide proper fair use guidelines. This study analysed various fair use guidelines for them and copyright law to identify key areas of fair use guideline for the academic libraries. It also investigated 10 university libraries' web sites to find that the identified key areas are delivered to the educators and students.

키워드 : 정보 공정사용, 저작권법, 대학도서관, 지침,
fair use, university libraries, guidelines, copyright

* 학술진흥재단 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shchoi01@krf.or.kr)

■ 논문접수일자 : 2007년 3월 25일
■ 계재확정일자 : 2007년 3월 28일

1. 서 론

공정사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과 무관하게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의 소유자 이외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정의되어 왔다(이호신 2002). 대부분의 저작권 법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목적의 공정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공정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례별로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교육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을 여러 가지 통신수단과 정보기기를 통해 교육에 활용하고 과제에 활용하는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관련된 각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최근 들어 강의실 강의에서도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과 교육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정사용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구성원에게 정보의 공정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저작권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될 때 정보의 공정사용을 유도하는 주체로서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교육자와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주목표이므로 직접적인 정보제

공 외에도 원격교육, 강의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학 구성원의 정보활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그동안 저작권에 관련되어 관내 정보자원의 공정사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주력하였으나 대학구성원에게도 정보 공정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필요한 지침을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 정보활용교육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은 교육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대하여 교육자와 학생에게 주요 개념을 인지시키고 대학 내 정보활용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요인을 최소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 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 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은 오랫동안 교육자와 학생에게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정보제공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디지털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이용자들이 여러 정보이용 환경에서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활용 교육

〈표 1〉 원격교육과 공정사용에 관련된 사서의 역할

참여 분야	사서의 주요 역할
교육자료 제공 및 장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교육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사본을 보유 - 원격교육을 위한 장서정책 수립 및 저작권법을 고려한 보유 기준 수립 - 정보자원 활용 도움말 제공 - 저작권법을 고려한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자료 평가
저작권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정사용과 관련된 정책과 저작권에 대한 대학차원의 정책수립에 참여
저작권 확보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교육 정보자원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확보 - 저작권 법을 침해하지 않는 유사 대체 정보자원 검토
저작권 교육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보매체의 정보자원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자와 학생에게 제공 - 정보의 공정사용에 대한 지침 제공

에 대하여 효과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박수희, 최성우 2006, 이정연, 최은주 2006) 이중 이정연과 최은주의 연구에서는 정보활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보활용 교육의 효용성이 높은 영역을 도출하였는데 정보윤리 영역과 정보분석 영역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활용 교육이 강조되면서 사서의 역할에도 이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의 사서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사서는 강의실 밖에서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에 대해서도 정보활용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의 핵심부분이 교육참여 부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Reyes 2006).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대학교육 공간이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공간의 교육에서는 적절한 정보활용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크루스(2001)는 원격교육 환경에

서 공정사용 지침을 제시한 TEACH ACT에서 특별히 사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없지만 원격교육에서 정보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주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크루스가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면 사서는 〈표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정사용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대학에 적절한 공정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도서관이 연관된 공정사용과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전송과 복제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학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의 서비스와 저작권자의 서비스가 상충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도서관 면책 조항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정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유미숙 2003)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측면에서도 강조된 저

작권 사항은 복제권과 전송권인데 이는 원격교육을 위해 저작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면 수신한 사람의 기기에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김현희, 정경희 2002).

저작권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이용 원리의 성격과 적용 원리를 분석한 연구로서는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례 중심으로 정보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정이용 해석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남은하 2002). 이 연구에서는 공정이용 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크게 시장실패 접근법과 공익적 접근법으로 나누고 있다. 시장 실패 접근법은 공정 이용 원리가 일정 부분 저작권을 제한해줌으로써 정보시장의 경제적 활성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공익적 접근법은 창작에 대한 개인적 지적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공익을 위한 지식 창조를 보장하는 목적으로서 공정사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에서의 공정사용은 후자의 개념에 더 적합한 것으로서 정보시장의 경제성이 핵심이 아닌 학술연구와 교육으로 추구될 수 있는 공익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에서는 공정사용에 대한 연구들이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정사용 해석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Scholosser 2006). 즉, 다양한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자료를 중심으로 공정사용 지침을 제시한 CONFU (Conference on Fair Use) 지침에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자료를 강의지정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사용 이슈에 대한 지침이 누

락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정사용이 쉽게 해석되고 판단될 수 없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Crews 1999).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자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이 정보를 활용할 때 윤리적, 합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파악될 수 있고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이 공정사용에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지침을 분석하여 대학내 구성원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유추되는 것이다.

3. 공정사용에 관련된 저작권법 및 지침 분석

3.1 국내 저작권법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에 대한 개념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례별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을 제한받지 않고 공정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기존 저작권법에서 '정치적 연설', 및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공정사용하는 사례들이 추가되는 등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항목이었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는 정보 공정사용 범위에 대한 일부 세부항목이 보완되었다.

추가된 조항인 제 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적,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표 2〉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

개정 이전	개정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절 저작재산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제23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4조 (출처의 명시)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진술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 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공정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학교교육 목적상 저작권을 제한하는 항목에서는 개정이전 법에서는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육목적’의 개념을 ‘수업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해놓고 있다. 또한 공연, 방송, 복제로 한정했던 정보이용 방식을 인터넷과 원격교육

환경에 맞게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을 허용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범위도 일부분이라고 명시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 정보이용 사례에 따라 각기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을 나타났다.

3.2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미국의 저작권법 제107조는 비평, 논평, 보도, 교육, 학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사용의 대상과 범위, 한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사용은 사실상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표 3〉 개정 저작권법에서 수정 보완된 학교교육 목적상 저작권 제한 사유

개정 이전	<p>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p> <p>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고등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p>
개정법	<p>제4절 저작재산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p> <p>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를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p> <p>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⑩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있다(이호신 2002).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에 따라 공정사용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개념적인 기준 4 가지를 명기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에서 제시한 비평, 논평, 보도, 교육 등의 목적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 밖의 정보이용도 공정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7조에서 명기한 공정사용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이용 목적과 특성(Purpose and Character of Use)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적 용도이며 공정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목적은 비영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공정사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반드시 교육적 목적으로 하여 모든 정보 이용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저작물이 창작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저작물인가를 판단하고 공표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창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공정사용의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저작물 이용 분량(Amount)

원본에서 복제한 분량과 질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정사용 지침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요소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복제량을 넘는 경우는 공정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복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미국 도서관협회에서는 구체적인 복제량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4) 잠재적 시장에의 영향(Effect of the Use on the Market)

정보를 저작권자의 제한없이 이용하였을 경우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약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 공정사용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3.3 TEACH ACT

2002년 10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교육자와 사서들이 추진해왔던 원격교육에서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법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은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로 TEACH ACT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보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정보물을 원격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원격교육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가 교육에 사용하는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와 이용 한계를 강의실내로 조정할

수 없다. 즉, 원격교육을 위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포하거나 원격교육 사이트에 공시하여 학생들 간에 유포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등 문제사항이 발생하였고 원격강의를 위해 인쇄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교육자들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요역할을 하는 사서들이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교육과 저작권 보호 상호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인디애나 법대 교수인 케네스 크루스(Crews, 2007)는 TEACH ACT의 역할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범위를 확장

TEACH ACT는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정보자료를 디스플레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지역적 범위 확장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교육적 용도로 정보자료를 배포하는 지역적 범위를 강의실과 유사한 장소로 제한하였는데 TEACH ACT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제공받는 지역적 제한사항이 없다. 원격교육은 교육장소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형태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3) 전송되는 정보내용의 저장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종종 교육기관이 원격 교육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TEACH

ACT에서도 단기간동안 학생들의 정보접근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정보라도 저장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4)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교육 자료의 디지털전송을 위해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나 디지털 버전이 없는 아날로그 자료에 한하여 허용한다.

TEACH ACT에서는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원격교육에 관련된 정보이용 범위와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자와 학생에게 안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에게는 원격교육 수강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과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격 교육에서 교육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정보자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과정에 활용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제한점을 인지해야 한다.

3.4 미국도서관협회(ALA) 강의, 연구, 도서관 지정을 위한 복사 지침

미국도서관협회는 미국대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와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등과 협의하여 강의, 연구 및 도서관 지정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게 될 경우 지침을(Model Policy Concerning College and University Photocopying for Classroom, Research and Library Reserve Use)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미저작권법의 공정사용 독트린(Doctrine)에 따라 교육적 용도로 강의와 연구, 도서관 지정을 위해 복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교육자 및 사서, 대학직원이 공정사용의 한계와 허용 범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ALA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 사용의 범위 중 복사제한이 없는 자료는 <표 4>와 같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경우는 용도별로 복사의 허용 및 활용 범위가 각기 다른데 크게 연구용도, 강의내 이용용도, 도서관 지정 용도로 나

<표 4> ALA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사제한이 없는 자료

자료 유형	세부내용
저작권이 없는 출판된 자료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자료 퍼블릭 도메인 자료
저작권기간이 지난 출판된 자료	저작권이 갱신되지 않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중 학위논문과 같은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미국 정부자료	특별히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정부자료

〈표 5〉 ALA 지침 중 용도별 원문 이용 허용 범위

용도	활용 범위	원문 이용 허용 범위
연구 용도	학술적 연구나 강의준비 용도로 복사 (SINGLE COPY)	1) 도서의 한 챕터 2) 신문이나 학술지의 논문, 기사 1건 3) 단편, 단편 에세이, 단편 시 1건 4)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의 차트, 다이아그램, 그래프, 그림, 만화, 사진 1건
강의 내 이용 용도	문서 자료 1) 매 학기에 동일 자료 유포는 하지 않도록 함 2) 한 학생당 1건씩 배포하며 배포된 복사본은 자료를 배포받은 학생이 반드시 소유해야 함 3) 복사본 첫 페이지에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기 4) 수강생은 복사 실비 이상의 비용을 책임질 수 없음	1) 원문이 2500자 이하인 경우는 전체 이용 가능 2) 원문이 2500자를 초과할 경우 1000자 이하로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원문의 10% 이하로 추출하여 이용 가능 3) 시의 경우 250자 이내 이용 가능
비디오 자료	1) 비디오는 교육자나 수강생에 의하여 상영되어야 함 2) 강의실 강의와 연계되어야 함 3) 상영 대상은 강의에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 4) 전체 상영대상자는 동일 장소에 있어야 함 5) 강의는 비상업적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6) 상영장소는 강의실이나 유사장소이어야 함 7) 합법적으로 생산된 상영물이어야 함	수업시간에 상영물을 보지 못한 수강생의 경우 도도서관에서 동일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는 것도 공정사용에 해당함
도서 관 지정 용도	공정사용 독트린 허용범위에 도서관은 학생들의 수업준비 및 개인 연구를 위해 복사본을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으며 활용 제한은 강의내 이용 제한과 같은 기준을 적용	1) 도서관 지정 복사본 부수가 1부인 경우: 전체 논문, 기사, 한 도서의 한 챕터, 시 한편 전부를 복사하여 비치할 수 있음 2) 지정을 요청한 복사부수가 복수인 경우: - 강의 특성에 따라 지정자료의 분량이 합리적 이어야 함 - 복수 부수는 관련 수강생 수에 따라야 하지 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은 6부 이하 - 지정자료에 저작권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지정자료의 복사가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됨.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해당자료의 원본이 적어도 1부 있어야 함

누어 그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표 5〉 참조)

ALA 가이드에서는 이밖에도 저작권이 있는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담당자가 저

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3.5 미국 대학도서관의 공정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사례

스탠포드 도서관 사이트에서 Copyright Reminder를 통해 도서관 자료 및 대학에서 정보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데이트를 하여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Reminder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기본 안내 :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안내하고 있다.

2) 정보공정사용(Fair Use Doctrine) :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사용의 개념,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3) First Sale Doctrine :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정당하게 정보를 구입한 저자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일정 범위내에서는 정보를 빌려주거나 양도해줄 수 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도서 등 교과에 관련된 정보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녹음된 음악이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First Sale Doctrine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대면 강의 (face to face teaching activities) : 강의실 강의에서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5) 원격 교육 : 원격교육시 인지해야 할 정보 공정사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TEACH(Technology, Education, ACT)에 근거한 기준

- 교육과정의 일부여야 함

- 강사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지도와 관리하에 사용되어야 함

- 교과 내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TEACH ACT에 따른 공정사용 범위에 벗어나는 행위

- 강의실 외에서 참조하기 위하여 구입된 교과서 및 기타 정보원을 업로딩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학생이 구입)

- 특별히 원격교육을 목표로 개발된 교재를 업로딩 하는 경우

- 불법적으로 습득한 자료를 업로딩 하는 경우

6) 인터넷과 저작권 :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 활용에 대한 권리와 사항과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주의할 사항, 공정사용 연관 사항,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공지할 의무, 링크 제공시 공정사용에 대한 유의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7) 전자 교재(COURSEPACKS) : 스탠포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교재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의 정보 공정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8)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Peer-to Peer File Sharing :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파일 공유에 대한 한계점과 위반시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9) 도서관 연관 저작권 관련 사항 : 도서관에 적용되는 복사허가 범위, 강의용 자료 지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 저작권 자료를 활용하는 허가를 얻는 방법 : 도서관 용도, 면대면 강의, 원격 교육 외에 자료를 활용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1) 스탠포드 대학과 소속된 저자에 관련된 저작권 안내 : 스탠포드 대학이 저작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12) 저작권과 공정사용에 대한 정보원 제공 : 저작권에 대한 기초 안내를 하는 사이트 링크 및 스탠포드 대학의 저작권 및 공정사용 센터 등 중요 웹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표 6〉 인디애나 대학 공정사용 체크 리스트

목적(Purpose)	
공정사용 허용한도내 사용	공정사용 허용한도가 넘는 사용
<input type="checkbox"/> 강의실 강의 <input type="checkbox"/> 연구 <input type="checkbox"/> 장학용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비평 <input type="checkbox"/> 의견제시 <input type="checkbox"/> 뉴스 리포트 <input type="checkbox"/> 새 저작물 창작 <input type="checkbox"/> 제한된 정보접근 <input type="checkbox"/> 패러디	<input type="checkbox"/> 상업적 활동 <input type="checkbox"/> 정보 이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오락 <input type="checkbox"/> 부정직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원저작자 인정 거부
Nature	
공정사용 허용한도내 사용	공정사용 허용한도가 넘는 사용
<input type="checkbox"/> 출판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실 또는 논픽션 기반 <input type="checkbox"/> 교육적 목적 중요도	<input type="checkbox"/> 비출판자료 <input type="checkbox"/> 순수 창작물(예술, 음악, 소설, 영화, 회곡 등) <input type="checkbox"/> 픽션
분량(Amount)	
공정사용 허용한도내 사용	공정사용 허용한도가 넘는 사용
<input type="checkbox"/> 적은 분량 <input type="checkbox"/> 작품의 사용한 일부분이 전체 작품의 중심이나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input type="checkbox"/> 특정 교육목적에 맞는 분량	<input type="checkbox"/> 전체 작품의 많은 부분 <input type="checkbox"/> 작품의 사용한 일부분이 전체 작품의 핵심인 경우
효과(Effect)	
공정사용 허용한도내 사용	공정사용 허용한도가 넘는 사용
<input type="checkbox"/> 원본 구입이나 합법적 습득 <input type="checkbox"/> 단일 또는 소수의 복사본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이 유통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저작권자 <input type="checkbox"/> 라이선스 체계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저작물 판매를 대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의 시장이나 잠재시장 악화에 영향을 미침 <input type="checkbox"/> 라이선스 체계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의 사용 허가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의 다량 복사 <input type="checkbox"/> 웹이나 다른 공공 포럼을 통해 저작물 접근 허용 <input type="checkbox"/> 반복되는 장기간 사용

3.6 인디애나 대학의 공정사용 체크 리스트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저작권 및 공정사용 센터를 운영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공정사용의 기본 개념, 주요 관련 지침,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 중 특히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공정사용을 인지하는데 유용한 서비스는 공정사용 체크 리스트이다. (<표 6> 참조) 공정사용 체크 리스트에서는 공정사용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별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대학도서관의 교육목적을 위한 공정사용 지침 핵심 영역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공정사용 관련 법과 지침을 분석한 결과 교육자와 수강생에게 강의를 위해 정보자료를 이용할 때 인지하도록 권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료 배포의 범위

교육자가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인지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육자료의 배포 범위이다. 교육 자료일 경우 배포되는 대상을 수강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ALA 지침이나 TEACH ACT 등 중요 지침에서 강조하는 기준이다. 인쇄자료의 경우 배포되는 지역적 범위가 강의실이나 지정 도서관 등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인 경우는 배포되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

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학습목적으로 정보 전송을 허용했듯이 인터넷이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교육환경에서는 원격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자가 학생들과 정보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 자료를 학습목적으로 배포한다 하여도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게 배포되는 범위를 관리할 의무가 교육자에게 있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2) 원본 사용 분량에 대한 공정사용

교육용 목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원본 전체를 복사하고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사용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개정된 국내 저작권 법에서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문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정보활용 관례에 따른 기준을 대학도서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지침에서는 공정사용을 저해하지 않는 정보이용 분량을 각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ALA 기준에서는 강의용도나 학습용도로 내용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경우 산문과 시 기준으로 공정사용 분량을 제시하고 있다. 디애나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공정사용 지침에서도 복사분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3) 매체에 따른 공정사용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정보의 매체에 따라 공정사용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인쇄 매체인 경우는 복사에 따른 부수에 대한 권고가 따르게 된다. ALA의 기준에서는 도서관에 강의용 자료로 지정할 경우에도 최대 6부 이하

로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따라서 교육자는 인쇄매체 교육 자료인 경우에도 무한대로 반복하여 매학기 복사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 매체인 경우는 복제가 아닌 상영 또는 방송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학습목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공정사용에 해당되는 것을 개정법에서 밝히고 있다.ALA 기준에서는 상영하는 장소가 교육적 장소로 제한되어야 하며 상영대상이 수강생으로 한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영화나 TV 방송물의 경우 상업적이거나 오락적 용도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정보물이므로 학습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자에게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 정보원에 대한 경우에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형태는 전자저널과 각종 데이터베이스, 웹 자원으로서 이용 범위의 제한점을 설명하고 있다.

4) 교육정보 전달 수단

대학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의 주요 그룹은 학생과 교수이다. 특히 인터넷과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교육이 행해지는 환경에서는 교육정보 전달을 하는 다양한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학습목적으로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도 되지만 학생들이 강의에 관련된 과제를 교육자에게 전송하고 학생들 간에 강의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교육목적으로 정보는 쌍방향으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자와 교육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합당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저작권사항 표기

강의와 연구목적으로 교육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활용하는 교육 자료에 출처를 명기하거나 원문의 내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과 참고문헌을 표시하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은 대학에서 수행되는 학술활동의 기본 요소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 사이트의 연구지원 영역에서 안내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에서도 연구지원영역에서 참고문헌 등 서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6) 도서관 지정자료 이용안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을 위해 자료를 도서관에 지정하는 것은 학습목적에 따른 공정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교수에게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요청하고 지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야 하며 수강생들은 도서관에 지정된 자료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내 대학도서관 사이트에서 공정사용 안내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 사이트에서 공정사용에 관련하여 교내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10개 대학 도서관 사이트(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숙명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성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7〉 국내 대학도서관 사이트에서 공정사용 안내 현황

공정사용 지침 핵심 영역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G대학	H대학	I대학	J대학
교육자료 배포의 범위										
원본 사용 분량에 대한 공정사용		×	×		×					
매체에 따른 공정사용		×		×				×	×	
교육정보 전달 수단										
저작권사항 표기		×		×						
도서관 지정자료 이용	×	×	×	×	×	×	×	×	×	×

〈표 7〉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대학도서관 사이트에서는 '지정도서 안내'와 같이 도서관 서비스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에는 교수나 학생이 학습목적으로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데 인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연세대에서는 과제로 리포트를 작성할 경우 표절에 관련되어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플래시 형태로 비교적 자세하게 정보활용 안내를 하고 있지만 공정사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두 번째로 공정사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부분은 매체에 대한 공정 사용 영역이지만 전부 전자저널에 대한 불법 이용에 대한 경고에 해당하였다. 고려대를 비롯한 4개 도서관에서 전자저널에 대한 불법 이용에 대한 사용기준과 제재 지침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전자저널의 공정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연구용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저장 행위와 저장한 자료를 개인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인쇄자료 공정사용에 대해서는 1개 도서관 사이트에서 인쇄자료에 대한 자료복제의 저작권법적 제한점

과 규정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었다.

국내 저작권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도서관은 1개 도서관에 불과하였는데 그나마도 도서관에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학습목적으로 공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한 사항은 안내하고 있지 않다. 강의지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강의관련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나 공정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

저작물의 원본 사용 분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원문복사 서비스 안내 부문이었으며 단행본은 부분복사가 가능하며 저작권 문제로 전권복사가 불가능하고 학위논문의 경우는 부분복사 및 전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속간행물은 학술논문 단위로 원문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권호에 해당하는 복수 논문이라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 표기 부문에서는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하여 교육안내를 하고 있는 사례와 서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안내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6. 결 론

대학에서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된 국내외 저작권법과 해외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에게 정보 활용 시 인지하도록 제공해야 할 정보내용의 주요 영역들을 교육자료 배포의 범위, 원본 사용 분량에 대한 공정사용, 매체에 따른 공정사용, 교육정보 전달 수단, 저작권사항 표기, 도서관 지정자료 이용안내 등 총 6개 영역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내 대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 구성원에게 공정사용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안내하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도서관 서비스 중심이거나 도서관 전자정보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였다.

정보기술이 교육현장에 도입되면서 교육자와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자면 대학구성원이 윤리적, 합법적으로 정보자료를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관련 기준 및 정보를 제공할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정보공정 사용에 대한 온라인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 연구(이정연, 최은주 2006)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정보활용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가 정보윤리 영역이다. 정보

공정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었을 때 올바른 정보활용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영역을 포함하여 대학도서관에서 공정사용 지침을 구성하여 대학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정사용 안내문은 교육자와 학생 차별 없이 제공되고 있는데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이 고려해야 할 공정사용 관련 사항은 다르다. 또한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와 개인 연구를 할 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공정사용 주의요소들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대상 이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정보 공정사용에 대한 지침을 세분해서 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정보활용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Samson and Granath, 2004)에서 나타났듯이 교육자가 정보활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의 올바른 정보활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사용 주요 사항과 최근 이슈들을 인지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윤리적, 합법적 정보활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기본 역할이지만 학생들과 면대면 접촉이 많고 과제 등을 통해 정보공정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자들에게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자와 학생의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현희, 정경희. 2002.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14–33.
- 남은하. 2003. 「미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원리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시대의 공정이용원리의 적용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문화관광부. 2007. 「개정저작권법 해설」.
[cited 2007.3.24], <<http://www.mct.go.kr>>
- 박수희, 최성우. 2006. “대학생을 위한 웹 기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57–387
- 안효진. 2003.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 『재산법연구』, 23(2): 419–464
-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15–334.
-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유미숙. 2002.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ALA. ALA Guidelines for Classroom, Research and Reserves Uses.
[cited 2007.2.24], <<http://www.cni.org/docs/infopols/ALA.html#mpup>>
- Buttler, Dwayne. 1999. "CONFU-sed: Security, Safe Harbors, and Fair Use Guidelin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4): 1308–1312
- Crews, Kenneth D. 1999. "Electronic Reserve and Fair Use: The Outer Limits of CONFU.",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4): 1432–1435
_____. 2001. "The Law of Fair Use and the Illusion of Fair-Use Guidelines." Ohio State Law Journal, 62: 599–702.
-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Copyright Management Center.
[cited 2007.2.25] <<http://www.copyright.iupui.edu/fairuse.htm>>
- Reyes, Veronica. 2006. "The Future Role of the Academic Librarians in Higher Education", Portal : Libraries and the Academy, 6(3): 301–310.
- Samson, S and Granath, K. 2004. "Reading, Writing and Research

- : Added Value to University First-Year Experience Programs. "Reference Services Review. 32(2):149–156
- Scholosser, Melanie. 2006. "Fair Use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ference & User Service Quarterly. 46(1): 11–17
- Stanford Library Copyright and Fair Use. [cited 2007.2.24], <<http://fairuse.stanford.edu/>>
-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the TEACH ACT). [cited 2007.2.25] <<http://www.ala.org/washoff/tech.pdf>>